

제 1378 호
1987. 8.27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알로현수
편집인: 공보감김성
전화: 731-6111-3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민간실
전화: 735-3337

<보정응>

시보

차 례

◎ 공문시행
 유통관리개선소요조치..... 4

◎ 조 례
 제 2196 호 : 서울특별시 공사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5
 제 2197 호 : 서울특별시 본청구청 공무원교육선등의 직함공무원 정원조
 례 중 개정조례..... 5
 제 2198 호 : 서울특별시 전자지산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7
 제 2199 호 : 서울특별시 민중문화정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7
 제 2200 호 : 서울특별시 새봄문화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8
 제 2201 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8

(이런계속)

권									
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202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0
제 2203 호 :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0
제 2204 호 : 서울특별시립야동상당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1
제 2205 호 : 서울특별시립장묘사업소 설치조례 중 폐지조례	11
제 2206 호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1
제 2207 호 : 서울특별시 남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12
제 2208 호 :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2
제 2209 호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2
제 2210 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3
제 2211 호 :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종지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13

㉠ 규 칙

제 2185 호 :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	14
제 2186 호 : 서울특별시립대학교사무분장 규칙	15
제 2187 호 : 서울특별시립장묘사업소사무분장규칙 폐지 규칙	17

㉡ 사업소·구고시

한강관리사업소 제 15 호 : 하천점용허가	18
도봉구제 359 호 : 하천점용 (하천일부각제) 허가	18
도봉구제 370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19
도봉구제 371 호 : 공작물신축허가	19
도봉구제 372 호 : 하천점용 (도시가스관매설) 허가	20
구로구제 4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	20

㉢ 공 고

제 512 호 : 관인재교부 및 폐기	21
제 51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	21
제 515 호 : 공원시설 (식당) 관리 위탁허가	22
제 516 호 : 도시계획안 (도로) 공람	23
제 517 호 : 창고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	23
제 518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24

- ◎ 구 공 고
종로구제 54 호 : 봉인개각 및 폐기24
- ◎ 시교육위원회공고
제 49 호 : 1987 년도 제 2 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6
- ◎ 사 련

공 문 시 행

성 동 구

토목 30510-25925

445-8704

1987.8.27.

수 신 : 받느곳 첩조

제 목 : 물품관리 전환 소요조회

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를 조회하오니 귀망부서에서는 87.9.25 까지 관리전환 요청 (성동구 토목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요청이 없음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음.

가. 관리전환 소요조회 내역

(장부가격 : 단위당 단가)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장부가격	취득년월일	상 태
6210-011	수은동안정기	100 V/400 W	개	119	16,000	미 상	중고
"	"	220 V/400 W	"	142	16,500	"	"
"	"	100 V/200 W	"	155	12,000	"	"
"	"	220 V/200 W	"	458	12,100	"	"
6240-012	수 은 등	200 W	"	576	3,900	"	"
6120-015	변 압 기	1 ϕ 50 KVA 22.9 KV/210 V	대	2	586,000	84.10.26	"
"	"	1 ϕ 75 KVA 3.3 KV/100 V	"	2	639,100	72.7.1	"
"	"	1 ϕ 20 KVA 6.6KV/210 V	"	2	294,000	84.10.26	"
5930-094	유럽계폐기	6.9 KV/200 A	"	1	350,000	"	"
"	"	7.2 KV/200 A	"	1	330,000	86.9.11	"
5930-072	CM S/W	100 V/100 A	개	21	25,000	미 상	"
"	"	220 V/100 A	"	22	25,000	"	"

성 동 구 청 장

받느곳 : 시산하전기과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8.27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㉔

◎ 서울특별시조례 제 2196 호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중 5급
"453"을 "48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별정직 "423"을 "453"(교육정원 30)
으로 하여 합계정원 "9695"를 "9725"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7. 8.27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㉔

◎ 서울특별시조례 제 2197 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 부청지방공무원정원표

- 가. 일간회차중 6급정원 "383"을
"410"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
직 "254"을 "279"으로, 수석직
"3"을 "4"로하고 행정 또는 현
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한다.
- 7급정원 "471"을 "506"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34"을 "369"
로, 기계직 "9"을 "8"로, 사서직
"1"을 "2"로 한다.
- 8급정원 "40"을 "36"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5"을 "31"
로 한다.
- 9급정원 "58"을 "1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87"을 "12"
로 한다.
- 별정직합원 "74"을 "77"로하고 정
원내용중 ?급상당 "25"을 "28"
로하여 전산처리관 "2"을 "3"으
로하고 마이크로필름촬영기사 2를
신설한다.

기능직정원 "19"를 "15"로 하고
정원내용 8등급중 "선원4"를
삭제한다.

고용직정원 "375"를 "381"로 하고
정원내용중 전공 "17"을 "18"로
기제공 "15"를 "16"으로, 타자원 "70"
을 "74"로, 청부 "51"을 "52"로,
감무원 "16"을 "20"으로, 사진사
"10"을 "7"로, 목공 "2"를 "3"
으로 하며, 조립수 3을 삭제하고
합계정원 "1,707"을 "1,695"로
한다.

나. 수도특별회계중 6급정원 "18"을
"2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10"으로 한다.

7급정원 "17"을 "21"로 하고 정원
내용중 행정직 "5"을 "10"으로
한다.

9급정원 "15"를 "2"로 하고 정
원내용중 행정직 "15"를 "2"로
한다.

기능직정원 "2"를 "5"로 하고
정원내용에 8등급 기제원 3을 신
설하며 합계정원 "87"을 "84"로
한다.

(별표 1-2) 경찰국 지방공무원정원표
중 고용직정원 "597"을 "415"로 하
고 정원내용중 전공 "11"을 "14"로,
청부 "15"를 "17"로, 운전원 "39"를
"46"으로, 타자원 "38"을 "49"로, 감무
원 "41"을 "43"으로, 기제공 "34"를
"35"로 하며, 교통순시원 "208"을 삭제

하고 합계정원 "667"을 "485"로 한다.

(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괄회계중 6급정원 "925"를 "947"
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729"를
"747"로 한다.

7급정원 "1,236"을 "1,257"로 하고 정
원내용중 행정직 "855"를 "872"로,
축산 또는 수의직 "22"를 "26"으
로, 전기직 "23"을 "24"로 한다.

8급정원 "2,037"을 "2,099"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585"을 "1,541"
로, 기제 또는 전기직 "38"을 "39"
로, 보결직 "38"을 "44"로 한다.

9급정원 "1,463"을 "1,478"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177"을 "1,192"
로 한다.

별정직정원 "69"를 "105"로 하고
정원내용중 7급상당 "39"를 "74"
로 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 "35"를
신설하고 8급상당 "13"을 "14"
로 한다.

기능직정원 "120"을 "127"로 하고
정원내용중 7등급 전기장 "68"을
"73"으로, 기제장 "11"을 "14"
로, 8등급 전기원 "40"을 "39"
로 한다.

고용직정원 "1,937"을 "1,982"로 하
고 정원내용중 타자원 "169"를
"186"으로, 수위 "29"를 "30"으
로, 전공 "280"을 "285"로, 기제공
"67"을 "73"으로, 청부 "190"을
"189"로, 감무원 "112"를 "114"로,
조립수 "6"을 "10"으로 하며, 정원내

용에 사육원 1을 신설하고 합계정원 "8,189"를 "8,394"로 한다.

나. 특별회계중 9급정원 "354"를 "357"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07"을 "310"으로하며 합계정원 "1,699"를 "1,702"로 한다.

(별표 3) 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정원표 중 고용직정원 "57"을 "62"로하고 직선내용중 운전원 "5"를 "6"으로, 감구원 "18"을 "22"로하며 합계정원 "31"을 "36"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정원인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원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연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98 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자계산소 지방공무원정원표중 행정직정원 "56"을 "58"로하고 정원내용중 6급상당 "12"를 "14"으로 하며 전자통신기사 1을 신설하고 7급상당 "7"을 "8"로하며 프로그래머 1을 신설한다.

고용직정원 "1"을 "2"로하고 직선내용에 운전원 1을 신설하며 합계정원 "81"을 "8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운동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연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99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중 8급정원 "4"를 "6"으로 하고 정원내용에 통신직 1 및 임업직 1을 신설한다. 기능직정원 "4"를 "5"로 하고 정원내용중 7등급 전기장 "2"를 "3"으로 한다. 고용직정원 "101"을 "102"로 하고 정원내용중 전공 "9"를 "10"으로 하며 합계정원 "128"을 "132"로 한다.</p>	<p>"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조의 2 (사무국장) 관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세종문화회관 지방공무원정원표중 2, 3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급정원내용 "행정직 1"을 "행정 또는 별정직 1"로 하며 합계정원 "240"을 "241"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문 이에 공포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20%;">계</th> <th style="width: 20%;">급</th> <th style="width: 20%;">정</th> <th style="width: 40%;">정 원 내 용</th> </tr> <tr> <td>2, 3</td> <td>급</td> <td>1</td> <td>행정직 1</td> </tr> </table>	계	급	정	정 원 내 용	2, 3	급	1	행정직 1
계	급	정	정 원 내 용						
2, 3	급	1	행정직 1						
<p style="text-align: right;">1987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200 호</p> <p>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을</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문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201 호</p> <p>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p>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생과대학에 약물화학과, 독극물과, 생물약품과, 기기분석과, 식품분석과, 식품위생과 및 첨가물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 제6항을 삭제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물약품과는 수입의약품, 균등의약품 및 생물약품등의 시험분석 및 연구를 관장한다.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식품위생과는 어육면제품, 청장유류, 주류 및 유기농품검사와 시험연구를 관장한다.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첨가물과는 식품첨가물, 수입식품류(수입타알렉소, 보존료첨가물등) 식품용기 및 포장, 방청제, 완구류등의 검사와 시험연구를 관장한다.

제8조 제1항중 "수질보존과, 세균과, 제기물과"를 "수질보존과, 제기물과, 세균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보건환경연구소 지방공무원집행표중 연구직정원 "74"을 "85"로 하고 정원내용중 연구관 "14"를 "16"으로, 연구사 "60"을 "69"로 한다.

6급정원 내용중 수산 또는 수의직 "5"을 "5"로 하고 정원내용에 보직직1을 신설한다.

7급정원 "26"을 "23"으로하고 축산 또는 수의직 "22"를 "18"로하며 정원내용에 보직직 "1"을 신설한다.

9급정원안 다음에 의료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집행정원 "177"을 "185"으로 한다.

제급별	정 원	정 원 내 용
의료직	1	약사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은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202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 의료직 정원 "349"를 "362"로 하고 정원내용증 간호원 "316"을 "329"로 한다.

고유직정원 "283"을 "299"로 하고 정원내용증 보조 "41"을 "49"로, 잡무원 "83"을 "86"으로 하며 조사원 5를 신설하고 합계정원 "781"을 "8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8. 27.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03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7급정원란 다음에 8급정원란, 의료직정원란 다음에 별정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급	정원	정 원 내 용
8 급	1	행정직 1
별정직	1	7급상당 1 (영양사)

의료직정원 "1"을 "2"로 하고 정원내용증 간호원 "1"을 "2"로 한다. 고유직정원 "13"을 "16"으로 하고 정원내용증 잡무원 "2"를 "3"으로 하며 정원내용에 수위 2를 신설하고 합계정원 "17"을 "2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8. 27.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04 호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중 의료직
정원 "1"을 "2"로하고 정원내
용중 간호원 "1"을 "2"로한다.
별정직정원 "19"를 "20"으로하
고 정원내용중 7급상당 영양사 1
을 신설하되 합계정원 "35"를
"3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장묘사업소설치조례제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8. 27.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205 호

서울특별시립장묘사업소설치조례제지조례

서울특별시립장묘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폐지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7. 8. 27.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206 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
조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종합건설본부 지방공무원정
원표 가.공사본부 정원표중 기능직
정원란을 삭제하고 합계정원 "275"
를 "27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8.27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207 호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
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
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고용지 정
원내용중 청부 "3"을 "1"로
하고 정원내용에 조결수2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8.27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208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고용
직정원 "80"을 "81"로 하고, 정
원내용중 사육원 "2"을 "3"으로
하며 합계정원 "115"를 "11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8.27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209 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중 의료직장
 원 "1"을 "2"로 하고 경찰내용중
 간호원 "1"을 "2"로 하며 합계정
 원 "317"을 "31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7.8.27

서울특별시장 염보천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10 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한강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
 원표중 6급정원 "42"를 "4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 또는 별정직
 "4"를 "3"으로 한다.
 기능직정원 "279"를 "287"로 하

고 정원내용 7등급중 선장 "1"을
 "3"으로 하며 기관장 4를 신설하
 고 8등급안에 선진 3을 신설하거
 "9등급선원 1"을 삭제한다.
 고왕직정원 "404"를 "430"으로 하
 고 정원내용중 권공 "46"를 "48"
 로 운전원 "20"을 "26"으로, 감
 시원 "44"를 "55"로, 잡부인 "40"
 을 "47"로 하며 합계정원 "921"
 을 "95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8.27

서울특별시장 염보천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11 호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삭제한다.
 "제 4조" 및 "제 5조"를 "제 3조"
 및 "제 4조"로 하고 제 5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 (하부조직) ①소장실에 서무계 및 운영계문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운영계장은 지방통신기사로 보한다.

②통계소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조와 같다.

1. 서무계

가. 문서, 편인관수, 보안 및 청사관리

나. 인사, 복무 및 직원후생
다.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라. 청원경찰관리
마. 기타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영계

가. 지령실운영 (경보전파)

나. 시설 및 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다. 공중전송 항공통계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라. 기타 방공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열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85 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 본문중 "조사계 및 사회지도계"를 "조사계, 사회지도계 및 환경순찰계"로 하고 동조 제 2 항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순찰계

가. 유희취락편사업의 총괄조정, 분석 및 평가

나. 유희취락편 도시미관, 보건위생등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다. 유희취락 시범참여운동 지도, 지원 및 교육

라. 유희취락상황실 운영

마. 환경순찰(공공시설물, 가로환경, 무려가 및 옥상분량전물, 청소, 교통, 녹지, 광시장, 잡상인등)

바. 구청장이 지정하는 환경에 관한 조사

수. 기타 환경 및 유희취락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대학교사무분장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1987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엄보천

◎서울특별시규칙제 2186 호

서울특별시립대학교사무분장규칙

서울시립대학교 사무분장규칙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시립
대학교의 라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무과) ①교무과의 교무제
및 수업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학
장주사로 보한다.

②교무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무제

- 가.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나. 교원의 인사관리, 제증명발급
- 다. 부속, 부설기관 관리
- 라. 교원의 해외여행, 연수, 논문
절 간행
- 마. 학술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
비 관리
- 바. 학생징 원천관리
- 사. 입학, 학위수여 및 부건물관리
- 야. 학적관리, 학사상제 및 제증
명 발급
- 자. 외국인, 학생동 원리

카. 기타 과내 타제의 주관역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업제

- 가. 수업 및 교외교육, 실습관리
- 나. 강사 및 강사로관리
- 다. 교과과정 편성 및 조정
- 라. 학생시험, 성적, 출결관리
- 마. 강의실, 연구실, 실험실배정 및
교구, 교육매체의 수급관리
- 바. 체육특기자관리 및 야간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조 (학생과) ①학생과에 학생제
및 장학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학
장주사로 보한다.

②학생과에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제

- 가.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 나. 총학생회 운영, 지도
- 다. 학생상벌, 각종단체출, 행사등
지도감독
- 라. 학생취업부업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과내 타제의 주관역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장학제

- 가. 장학설 및 장학금관리
- 나. 학생봉사동원 및 지원
- 다. 제증명 발급
- 라. 서울특별시공무원 특별임용관리
- 마. 학생보건 및 학생회관관리

<p>바. 학생회의 연수, 학생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 4 조 (총무과) ①총무과에 서무계 및 인사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p> <p>②총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서무계</p> <p>가. 대학기본 운영계획 및 심사 분석</p> <p>나. 문서, 보안, 관인관수, 청사, 시설물 관리</p> <p>다. 비상계획, 민방위, 향토예비군 및 차량, 행사, 의전</p> <p>라. 일반회계, 기성회계, 예산편성 및 등록금 책정</p> <p>마. 기타 국내 타과 및 타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인사계</p> <p>가. 직원의 임용, 인사기록관리</p> <p>나. 직원의 복무, 상훈, 징정, 교육훈련</p> <p>다. 대학기구의 조정, 대학운영 제도개선</p> <p>라. 직원후생, 재증명 발급</p> <p>마. 연금, 의료보험</p> <p>바. 사회지도, 감사에 관한 사항</p> <p>제 5 조 (경리과) ①경리과에 경리계 및 관제계를 두며, 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p> <p>②경리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경리계</p> <p>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p> <p>나. 기성회계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p> <p>다. 급여, 국민저축, 재증명 발급</p> <p>라.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 출납</p> <p>마. 과내 타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관제계</p> <p>가. 국·공유, 행정,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p> <p>나. 물품, 각종교육 매체의 수급 관리 및 불용처리에 관한 사항</p> <p>제 6 조 (시설과) ①시설과에 시설계 및 기전계를 두고, 시설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기전계장은 지방전기 기사로 보한다.</p> <p>②시설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시설계</p> <p>가. 학교건물 및 시설물의 시설 계획 및 시공감독 유지관리</p> <p>나. 수목 및 조경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유지관리</p> <p>다. 전선공사에 따른 차장관리</p> <p>라. 과내 타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기전계</p> <p>가. 전기, 통신,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유지관리</p>
---	--

나. 급수, 위생, 난방, 기계설비 등
의 시설계획 및 시공감독 유
지관리
다. 각종 설비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제 7 조 (사서과) ① 사서과에 수서계
및 열람계를 두고, 수서계장은 지
방행정주사로, 열람계장은 지방사서
로 보한다.

② 사서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서계
가. 도서구입, 교환, 등록, 제작,
제본

나. 도서관 자료의 선정
다. 각종 문지 및 직인관리
라. 도서관 자료의 정리, 구분
마. 도서관 자료의 체계, 분류
바. 도서관 자료 목록의 작성,
작성, 보관

사. 도서관 자료의 책자목록 발
간, 정리, 통계
아. 기타 과내 타과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열람계
가. 도서관 자료의 관내 열람
나. 각종 열람실 관리
다. 도서관 자료의 배열, 색출,
환의대출, 복사
라.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 관리
마. 각종 도서관 자료의 이용 통
계에 관한 사항

제 8 조 (부속, 부설기관) ① 대학교의
발전과 학문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② 부속기관으로는 외국어 어학원 및
시절과 교육원을 둔다.

③ 부설기관으로는 수도권개발연구소
및 산업경영연구소를 둔다.

④ 부속,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조 (직무대행) 총장이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장묘사업소사무분장규칙
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8. 27

서울특별시장 원보현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87 호

서울특별시립장묘사업소사무분장규칙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장묘사업소사무분장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업소·구 고시</div>		하천법 제 25 조 제 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정용 허가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한강관리사업소 고시 제 15 호 하천정용허가		1987년 8월 27일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역	정 용 면 적	정 용 목 적	허가받은자	
					주 소	성 명
'87. 8.27.	서울시 영등포 여의도동 85- 1번지선(한강) 의 12개소	하천	763,971㎡ (개소당 58, 767㎡×13개)	식음료 판매시설	서울시강남 구 논현동 199	한국보훈 복지공단 사장 윤종화
◎도봉구 고시 제 369 호 하천정용 (하천일부복개) 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항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하천정용허가 하였기 이를 같은 법 제 25 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1987. 8.27. 도 봉 구 청 장			
허가일자	위 치	정 용 목 적	허 가 내 용	수 허가 자		
'87.8.20	상계동 173-6	하천일부 복개	○ 하천명 : 당현천 ○ 면적 : 1,483 M ² (B = 8.7-15.7 M L = 111 M) ○ 공사가격 : 87,8,30- 87,11,3)	도봉구청장 이재환		

◎도봉구 고시 제 370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3 호 (87.2.21) 로 시설결정되고 동고시 제 161 호 (87.3.12) 로 지적승인된 도봉구 월계동 221-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8.27.

도 봉 구 정 장

가. 사업시행지: 도봉구 월계동 221-1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명칭: 진야교통(주) 사무실신축
 다. 사업의규모

- (1) 시행면적: 3,710 ㎡
- (2) 건축면적: 117 ㎡
- (3) 연면적: 159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29-1
 진야교통(주) 대표이사 원응봉
 마. 사업기간: 87.8.21-88.6.30

◎도봉구 고시 제 371 호

공작물신축허가

하천법 제 25 조의 구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작물 신축허가 하였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 5 조에 의거 고시한다.

1987. 8.27.

도 봉 구 정 장





허가일자	위 치	공사내용	허 가 내 용	공사기간	수리가자
'87.8.21	도봉구 상계동 205-1 중계동 467-2	당면 1 교 (확장)	B=15 M L=36 M 철근콘크리트교량	허가일 로부터	한근테크 개발공사
	도봉구 상계동 711-2 중계동 574-9	당면 3 교 (신축)	B=25 M L=55 M 철근콘크리트교량	'88.12.31	김수환
	도봉구 상계동 754-4	당면 4 교 (신축)	B=30 M L=40 M 철근콘크리트교량		

<p>◎도봉구고시 제 372 호</p> <p>하천점용 (도시가스관매설) 허가</p> <p>하천법 제 25 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 5 호 규정대 의거</p>	<p>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 규정대 의거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8.27 도 봉 구 청 장</p>
---	--

허가일자	위 치	점 용 목 적	허 가 내 용	수 허 가 자
'87.8.21	도봉구쌍문동 368-2 ~ 372-2	도시가스관 매설	1. 공작물 내역 $\phi = 300 \text{ mm}$ 가스관 $L = 38 \text{ m}$ (0.5 m × 0.5 m 콘크리트보강) 2. 점용기간: '87.8.21 ~ '92.8.20	도봉구상계동 711 한일개발(주) 대표이사 진 장 수

<p>◎구로구고시 제 41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790 호 ('85.11.22)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정희여자상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권한위임규정 ('85.12.20 사무위임규정)에 의거 동 사업시행허가를 변경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p> <p>라. 변경내용</p>	<p>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8.27 구 로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0-42외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학교) 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 5,549 평</p>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진 수 면 적	1,169.99 평	1,729.425 평	증 559.435 평
진 수 연 면 적	4,359.50 평	5,920.275 평	증 1,560.775 평

<p>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구로구 구로동 390-42의 8 필지 학교법인 문당학원 이사장 안상수</p> <p>바. 사업시행기간 - '85.11 ~ '87.12. 31.</p> <p>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p>	판인인영부	
	신	구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장의인	
인		
영	공인명 서대문구보건소장의인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고</p> <p>◎서울특별시공고 제512 호</p> <p>관인 재교부 및 폐기 공고</p> <p>서대문구 보건소장의 판인용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기함을 동규칙 제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8.27 서울특별시</p> <p>1. 사용 및 폐기일자: 1987.8.24</p> <p>2. 사용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장의 인 서대문구 보건소장의 인</p> <p>3. 폐기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장의 인 서대문구 보건소장의 인</p>		
<p>◎서울특별시공고 제514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완료공고</p> <p>1.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제320호('86.5.20) 및 서고 제251호('87.4.11)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변경허가된 서대문구 대천동 11-1 일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완료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8.27</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p>	<p>대현동 11-1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 (학교)</p> <p>사업의 명칭: 동창회관 및 교육관 증축</p> <p>다. 사업시행면적: 529,000㎡</p> <p>라. 사업규모</p>
--	---

구분	동창회관	교육관	계	비고
연면적	3,230㎡	822㎡	4,052㎡	
구조	지상 2층 - 8층	지상 4층		

<p>마. 사업시행자: 서대문구 대현동 11-1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우진</p> <p>바. 사업기간: 1986.10.14-87.7.31</p> <p>사. 준공도서: 별첨 (생략)</p> <p>◎서울특별시공고제 51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공원시설(식당)관리위탁허가</p> <p>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 84 아시아공원내 식당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 1, 2, 3 항에 의거 관리위탁허가하고 이를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8.27</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 84 번지</p> <p>나.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아시아 근린공원내 식당</p> <p>다. 위탁관리자: ㈜ 아시아리얼 김명만</p> <p>라. 시설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1,162,759㎡ • 건물 2,145,007㎡ - 1층 1,162,759㎡ - 2층 485,079㎡ - 지하 493,169㎡ <p>라. 관리기간: 1987.10 ~ 87.12.31</p> <p>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문의바람. (478-1062)</p>
--	--

◎서울특별시공고제 516 호
도시계획안 (도로) 공람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 일간 일반인 및 드레스코프자에게 보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마함.
 1987.8.24
 서울특별시장
 - 아 -
 가. 공람장소: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87.8.26-31;9.9

3. 도시계획안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및 변경안

구분	등급	유형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류	6-10	165	가리봉동 219-5번지 앞	152-27	
변경	소로	1류	10	165	가리봉동 219-5번지	152-27	위리변경 및 폭원 확장
신설	중로	2류	15	40	가리봉동 219-15번지	219-16	
신설	소로	2류	8	15	가리봉동 153-18번지	233-5	

◎서울특별시공고제 517 호

참고입찰처 반지에 대한 행정처분 "안"

18조의 4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7.8.27
 서울특별시장

참고입찰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

허가번호	소재지	대표자	창고명	허가내용	허가일시
11-15	강서구마곡동 223-5	홍길현	종곡창고	허가취소	'87.8.25
강서 22	강서구가양동 179-3	최명옥	신흥창고	영업정지 30일	'87.8.11

◎서울특별시공고제 518 호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 필요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

업 면허를 필요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7.8.27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항	사유
1260	한국전기건설공사	종로구 낙원동 143	이상복	면허취소	제 2 종 전기공사업 재지

구 공 고





◎종로구공고제 54 호






공인 개라 및 폐기공고

효자동장, 세종로동장, 종로 5, 6 가동장, 명륜 3 가동장, 창신계 1 동장의 직인 및 계인을 관인 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라 및 폐기함을 동규정 제 9 조 및 동규칙 제 6 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7. 8. 27
종로구청장

1. 사용 및 폐기일자:
1987.9.7. 09:00
2. 사용직인: 효자동장, 세종로동장, 종로 5.6 가동장, 명륜 3 가동장, 창신계 1 동장 직인 및 효자동, 세종로동, 종로 5.6 가동 직인
3. 폐기직인: 효자동장, 세종로동장, 종로 5.6 가동장, 명륜 3 가동장, 창신계 1 동장 직인 및 효자동, 세종로동, 종로 5.6 가동 직인
4. 직인의 개라 및 폐기 안명:
첨부 인영

구분	신 조	적 기 인 영
인 영		
인 영	명분 3 가동장 (민원인)	명분 3 가동장 (민원인)
인 영	 	 
인 영	호자동장 (민원인) (제인)	호자동장 (민원인) (제인)
인 영		
인 영	창신 제 1 동장 (민원인)	창신 제 1 동장 (민원인)
인 영	 	 
인 영	종로 5, 6 가동장 (민원인) (제인)	종로 5, 6 가동장 (민원인) (제인)

인 영	신	구	
			
공인명	세종로 동장 (민원인) (개인)	세종로 동장 (민원인) (개인)	
인 영			
공인명	세종로 동장인	세종로 동장인	
<p style="text-align: center;">시교육위원회공고</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고 제 49 호</p> <p>1987년도제 2 회고등학교입학자격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p> <p>1987.7.31에 시행한 1987년도 제 2 회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들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8. 25</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검정고시위원회의위원장</p>		<p>1. 합격자명단: 별도 개서 및 87.8.25 이후 발행되는 서울특별시보 게재</p> <p>2. 합격예정자의 조치</p> <p>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중 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3년제 고등 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 교 졸업예정자는 '88년 2월 입학할 하여야 합격이 확정된다.</p> <p>3. 합격취소</p> <p>합격자라 할지라도 응시자격에 결 격사유 및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는 합격을 취소한다.</p> <p>4. 합직증서 교부</p> <p>가. 교부기일: 1987.8.26 10:00</p>	

나. 교부장소: 각 고사장학교 (8.26 13:00 부터는 교육위원회의 장동교육과 교직계에서 교부) 5. 성적증명서 및 파급합격증서 발급	가. 발급기간: 1987.8.26 부터 나. 발급장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민원봉사실 (종로구신문로2가2-77)
---	---

사 령

◎ 1987년 8월 21일자		령제 26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재호	지방행정직 8급상당 (전산처리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병함.	경향국 민허과	지방행정직 9급상당	
◎ 1987년 8월 22일자		령제 26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영미	총무과 파견 ('87.8.23-'88.8.22)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시보	
◎ 1987년 8월 12일자		령제 26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영안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제 3호의 규정과 위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연료과	지방행정주사보	
◎ 1987년 9월 1일자		령제 271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호봉	발령직급	비고
김연섭	강남구	3호봉	지방토목지원보시보	
성원배	강동구	4 "	"	
오석본	성동구	3 "	"	
정명섭	동대문구	4 "	지방건설지원보시보	

성명	발령부서	발령호수	발령직급	비고
박기보	한강관리사업소	6호봉	지방화공기원보	
이상윤	선유수원지	4 "	지방화공기원보시보	
장선미	구르구보진소	2 "	지방간호원시보	
권금화	아동병원	1 "	"	
박정희	동부병원	7 "	지방간호원	
문경희	동부병원	1 "	"	

◎ 1987년 8월 27일자 명제 27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영철	남부건설사업소	남저도쓰매기 종합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8등급)
이재덕	남부건설사업소 파견 ('87.9.1-12.31)	"	" (9등급)
이영준	서부건설사업소 파견 ('87.9.1-12.31)	"	" (9등급)

◎ 1987년 9월 1일자 명제 27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유승준	중합건설본부 파견('87.9.1-'88.6.31)	도로과	지방기계기사보
송문욱	동부병원 파견('87.9.1-'88.2.28)	관악구보진소	지방보건의사보
김혜경	관악구보진소 파견(")	동부병원	"
김규환	정신병원 파견(")	은평구보진소	"
노덕순	은평구보진소 파견(")	정신병원	"

가. 공무 국외여행 허가변경

진명	여행자			명령사항			유격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당초	발령	발령		
제 17회 밀라노 국제전시회 국제전시회 (추진반)	도시계획국	지방보통과과	문승국	'87.7.22-8.5	'87.9.11-9.20	이탈리아		

전 품	의 별 자			명 령 사 항		목적지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당 초	변 경		
참가 권리증 의 조사	도시개발국 (강원기회단)	전문직 1등급	이 정 복	(10월간)	(11월간)		
서울특별시청							